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재개443.2-54	(전화번호 720-4627)	전결규정 4조 1항 부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3. 3		
보존년한	영 구		

보조기관	부 시 장	전결	협조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재개발과장			재개발사업계장
기안책임자	김창영 83. 3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시 장	통제	
제 목	도시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				

(제1안) 내 부 결 재

1. 당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개발구역중 무교구역제7지구 및 마포로제1구역제3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당시83년도 제1차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별첨 회의록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기 도시재개발법제 5조, 동법시행령제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 고 시 (안)

고시심사	1983.3.7. 제 65 호	
담당자	법제계장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무교구역 제7지구 및 마포로제1구역 제3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5조, 동법시행령제7조 및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정서 / 관인 / 발송

0201-1-8A
1969. 11. 10.

정직 질서 창조

190㎜×268㎜(2급인쇄용지 60g/㎡)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무교구역제7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7지구	7-1지구	7-2지구
대지면적	1047 M²	856 M²	243.3 M²
건축면적	405"	-	-
연 면 적	6247"	-	-
건 폐 율	39%	50%이하	-
용 적 율	500%	550% "	-
층 수	10/2	11층 "	-
주 용 도	사 무 실	업무시설	-
비 고	-	-	기존건물존치

나. 마포로제1구역제31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1,696 M²	1,696 M²
건축면적	646"	
건 폐 율	38%	45%이하
연 면 적	9,490"	
용 적 율	450%	670%이하
층 수	지상10층, 지하2층	15층 이하
주 용 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배 열	-	' 전면도로에서 3 M 이상후퇴 ' 측면도로에서 1.5" 이상후퇴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동 건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무교구역제7지구 및 마포로제1구역제3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변경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사본 1부.

2. 관계도서 1부.

(제4안)

수신 총무처장관, 공보관(141)

제목 관(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의뢰: 고시

나. 관(시)보 게재근명: 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도시재개발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첨부: 고시문사본 1부. 끝.

1305-2502-21(을)
1981. 12. 18 승인
190mm×268mm(인쇄용지2급 60g/m²)
조달청(1,000,000매 인쇄)

'83. 2. 23.

도 시 계 획 위 원 회 회 의 록

('83. 제1차위원회 속개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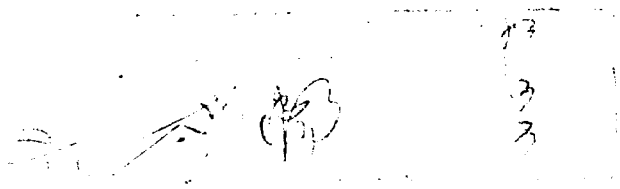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도 시 계 획 위원회

1. 일 시 : '83. 2. 23. 16:00

2. 장 소 : 기획상황실

3. 안 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의

4. 참석의원 : 의원장(대리) 박노경

의 원	김형만
"	김단제
"	이천수
"	안상영
"	김진호
"	이 동
"	최종무
간 사	도시계획과장
서 기	도시행정계장

의 원 장	이상연
의 원	이동백
"	곽영훈
"	박창호
"	유근완
"	최중현
"	임인식
"	방현익

6. 기타참석 : 시설계획과장, 가로계획2계장, 재개발과장, 재개발사업계장, 시고의 고적조성계장.

회 의 결 과 요 약

제1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 166개 로선중

163개 로선 - 가 결

3개 로선 - 수정가결

(하당1구역중) (폭 6M→4M)

제2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 금호3가 144-1일대 - 가결
- 돈암동 95 일대 - 보류
- 성북동 109-2 일대 - 가결
- 미아동 450 일대 - 가결
- 우이동 23-5 일대 - 보류
- 동산동 2가 1일대 - 부결
- 창전동 산 2 일대 - 가결
- 증산동 92 일대 - 가결

조건부

제5안 도시계획 마포로 제1구역 제31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 - 가결

제6안 도시계획 시설(시장) 결정

- 신천동 소매시장 - 가결

제7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 문래동 1가 39-1 도로 폐지 - 가결

제8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두동 124일대 진입로 결정 - 가결

제9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

- ㅇ 미림여중고교 변경 - 가결
- ㅇ 영등포 중고교 결정 - 가결
- ㅇ 중동중고교 부지변경 - 가결
- ㅇ 신문성중민 부지 변경 - 가결
- ㅇ 성경여중 고교 변경 - 수정가결

  (9650㎡ - 가결

  3303㎡ - 부결)

- ㅇ 대광중고교 - 가결
- ㅇ 덕흥중고교 및 제성중고교 변경 및 결정 - 가결

제10안 도시계획 무고 제7지구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결정 - 가결

= 회의진행 상황 =

간 사 : 성원보고

의원장 (대리, 박노경의원. 이하같음) : 지금부터 '83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속개본회의를 개최합니다

간사는 보고 하시오

간 사 : 1차 본회의 결과 보고 (생략 -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의 원 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 하겠읍니다.

일 동 : 동의 (원안접수)

의 원 장 : 간사는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시오

간 사 :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 이하생략)

의 원 장 : 지난 1차 본회의시 대부분이 소위원회의 수권 사항으로 의결된바 있는 안건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별도 본회의에서의 승인이나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까 ?

간 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상, 소위원회의 수권 규정이 없어 지난 본의원회에서 수권사항으로 의결 되었어도 소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또는 자문 기능외의 의결 기능은 인정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의원 : 그렇다면 소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안건에 대해서만 재검토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가결 또는 부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원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

일 동 : 동의 (소위원회 가결사항 - 원안가결)

부결사항 - 부 결)

○ 대광중고교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생략)

일　　동: 동 의 (원안가결)

○ 원효국교 부지 변경 및 계성국교 신설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원효국교 결정용지중 일부를 분리하여 계성국교 이전 부지에 포함하여 결정 하고자 하는것으로 (이하생략)

안상영 의원: 원효국교는 학교면적이 적어져도 가능합니까?

이천수 의원: 네니 학교로 가능 합니다

김진호 의원: 국민학교 2개교를 한 곳에 같이 묶어 두는 것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겠읍니다

안상영 의원: 학교는 많은 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 합니다

시교위 고지조성 계장 : 보충설명 (생략)

김안제 의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한군데 놓여서 결정하는 것은 고려상 문제가 있읍니다. 재검토 되어야 할것 같읍니다

김형만 의원: 김안제 의원안에 동의 합니다

시교위 고지조성 : 보충설명 (생략)

의 원 장: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읍니다

일　　동: 동 의 (원안가결)

(제7안) 도시계획 무교7지구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결정

재개발 과장: 제안설명 (1/20 이상의 변경이 수반되어 본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생략)

일　　동: 동 의 (원안가결)

83. 2. 10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의 록

('83 제1차 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1. 일 시 : 83. 2. 10 (수), 16:00

2. 장 소 : 도시계획위원회 사무실

3. 안 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4. 참석위원 : 위 원 : 김 원

" : 이 동배

" : 김 인식

간 사 : 도시계획과장

서 기 : 도시행정계장

5. 불참인원 : 위 원 : 김 복 수

" : 박 노경

6. 기타 참석 : 시설계획과장, 재개발과장,

재개발사업계장, 가로계획 2계장.

(1)

회 의 결 과 요 약

제5안 도시계획 마포도 제1구역 제31지구 사업계획 변경결정 - 조건부 가결

제1안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 166개 도선용

- 163개 도선 ---------- 가 결
- 3개 도선 ---------- 수정가결
  (아왕1구역중) (폭 6M - 4M)

제2안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 금호3가 1464 임대 ---------- 가 결
- 돈암동 85 임대 ---------- 보 류
- 성북동 109 - 2 임대 ---------- 가 결
- 미아동 450 임대 ---------- 보 류
- 우이동 23 - 5 임대 ---------- 보 류
- 용산동 2가 1 임대 ---------- 부 결
- 창전동 산 2 임대 ---------- 가 결
- 공산동 92 임대 ---------- 가 결

회 의 진 행 상 황

간사 : 소위원으로 구성한 5명의 위원중 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읍니다.
지금부터 83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
하겠읍니다.
오늘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위임토록 의결된 안건으로 재개발구역
해제지구내 도로결정및 기타도로결정안과 재개발사업계획 변경등 3
개 안건입니다.
안건보고는 기능별 주관확장이 보고하 도록 하겠읍니다.

일 동: 그렇게 진행합시다.

(제5안) 도시계획 마포로 제1구역 제21지구 사업계획변경결정

재개발사업계장 : 제안설명 (생략)

김인식위원 : 지난 본회의시 귀영은 위원의 의견과 같이필지조정이 선행됨이 이상적일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고란한 것 같읍니다. 건축선면선이 대각선으로 간선변에서 볼때 시각적인측면에 문제가있어 간선에 평행하도록 배치하고 자하나 토지이용상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것입니까?

재개발계장 : 현재의 같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해주시면 건축은 건축심의시에 재검토될수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인식위원 :: 건축의 배치문제는 건축심의시에 검토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읍니다. 본도시계획심의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중점을두어 다루도록하고 건축물배치에 관해서는 건축심의시에 하도록 하면 어떻겠읍니까

(3)

이동배위원 : 현재 수립된 건축계획은 없읍니까

재개발과장 : 현지로는 없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를 완화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건축심의시에 충분한 검토가 될수있을것입니다.

김 원 위원 : 본사안에 대한 본위원회 토의시 소위원회에서 계심의토록 보류 위임한 사유는 서울시 도지기본계획상 자연발생적인 형태가 아닌 도로의 격자형유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지개발사업시행은 도로·주차장·녹지등의 공공공간은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것인바 본계획에는 본건도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읍니다.

과거의 좋은사례를 최대한 수용하고 필지단위의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개발을 지양하고 주변의 도지이용계획이 고려된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겠읍니다.

김인식위원 : 지난 본위원회에서도 김위원 의견과 유사한 의견들이 있었읍니다.

김 원 위원 : 더욱이 본도로는 시울의 관문도로로써 그기능상 중요도를 감안, 도지이용계획이 다소조정되는것이 바람직하겠읍니다.

재개발과장 : 그렇게 하자면 개발이 너무지연될수 있읍니다.

김인식위원 : 김원위원의의견이 원칙이나 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당시의 기본입장과 또한 마포로는 C.B.D 와는 다른각도에서 판단 (C.B.D 보다는 한클래스정도낮은지역에서 검토)됨이 바람직함으로써 마포로변 전체에 대하여 격자형의 도로로 계획한다면 계획에서 부터 너무방대해져서 결국은 시행에 어려움이 앞서게 될것입니다.

본도로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도 수용하면서 사업시행추진을위한

토지 이용상의 고려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계획이 된것 같읍니다.

녹지의 위치와 건물위치 관련, 계획의 재설정 (도면에 의함)

김 원 위원 : 현재의 계획단계의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과장: 3명입니다.

김인식위원: 인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재개발과장: 20-30명 정도 됩니다

이동배위원: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구역 결정시기는

재개발과장: 80년 5월입니다

김 원 위원: 필지 자체는 80년도에 기도시계획 결정된 것이므로 재조정은 어려울 것 같읍니다

재개발과장: 당초의 건축계획 대로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나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요합니다

이동배위원: 필지별로 구분, 입안된 과정은 ?

재개발과장: 구역은 먼저 결정된 것이고, 사업계획은 용역에 의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 장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동배위원: 이상적인것이라면 현실과의 조화가 바람직 하겠읍니다
현재대로는 문제가 있는것이군요

김인식위원: 본토지는 위치 및 토지 자체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만 승인해 주면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시에 토의 하도록 할수 있겠읍니다

김 원 위원: 건물배치에 대해 의견한다 해도 건폐율, 용적율 등의 조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을것 같읍니다

김인식위원: 건축심의시에 검토될 수 있을것입니다.
배치문제는 사업시행자에 수정을 권고하도록 하면 어떻겠읍니까 ?

이동배위원: 지금까지 경위로 보아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겠읍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일　　동 : 동의 (가결 - 시행자에 대해 건물 배치 수정권고 조건부)

(제1안)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 재개발구역 도로신설

가로계획 2계장 : ○ 제안설명 (생략)

○ 총괄적인 현황 보고 (생략)

○ 재개발구역내 도로망 계획

1) 재개발구역 현재현황보고 (생략)

2) 문제점 (생략)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나 의견이 청취된 사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 중구 — 11개 노선 1525M

(동작구역) — 4개노선

가로계획 2계장 : 제안설명 (생략)

김인식 위원 : (2)번 노선의 폭은 ?

가로계획 2계장 : 10M입니다.

김 원 위원 : 서울시의 도로 패턴중 대로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 소로는 부정합 이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기회에 가능하다면 대소니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으면 합니다.

(4)번노선은 연장해서 더 계획되게 연결 시켰으면 어떻겠읍니까 ?

시설계획 과장 : 귀원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하 노출설명 (생략)

(2)번노선은 당초 폭10M로 계획했으나 폭 6M로 변경요구이는 주민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중심 도로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읍니다.

(신당 1구역) ----3개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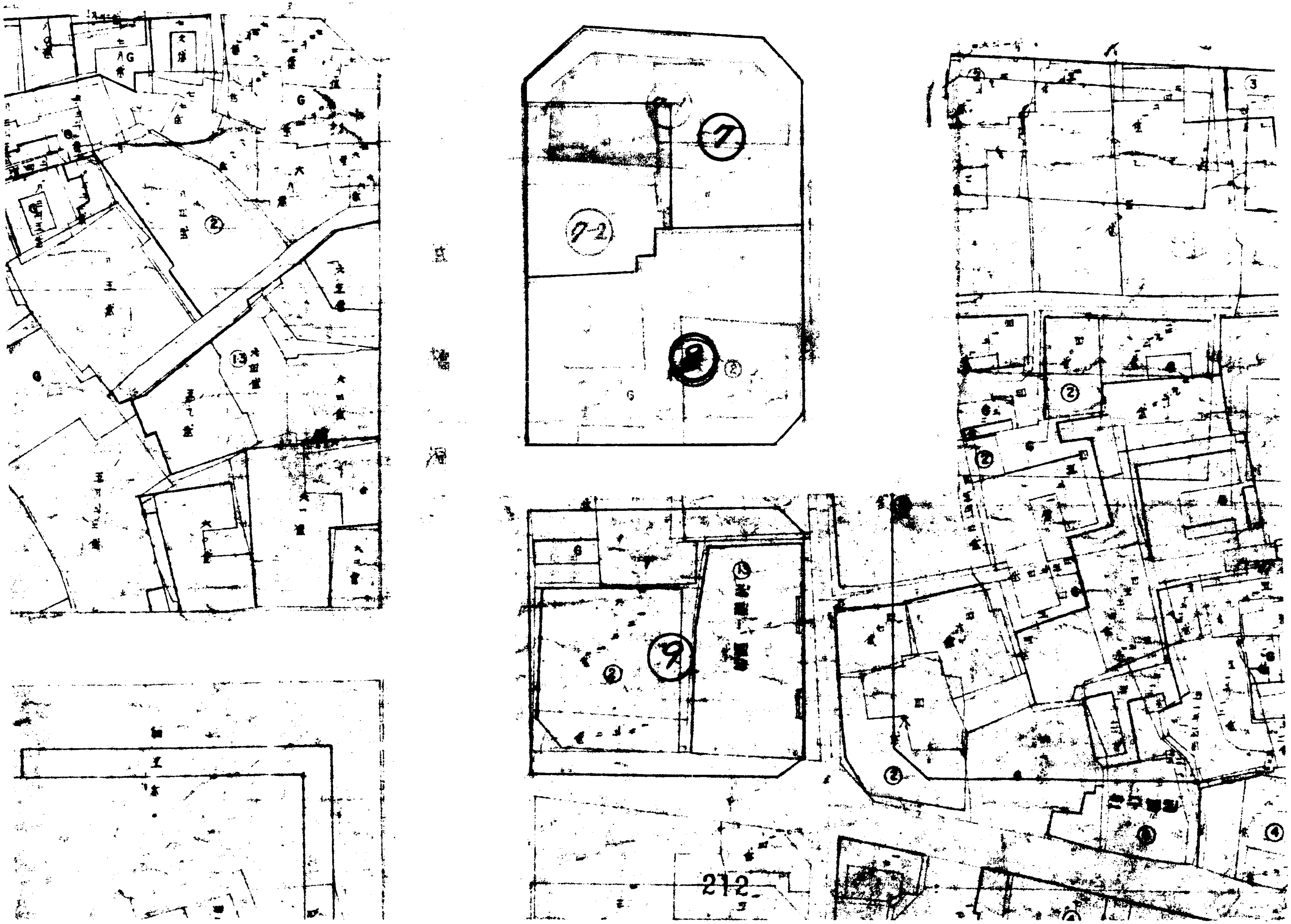
변경후